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려는 경우, 유족이 제출하는 기존 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망진단서, 화장증명서,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”을 “사망진단서, 화장증명서, 안장하려는 자의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각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5서식의 (뒤쪽)(Back Page) 첨부서류(Required documents)란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.

2. 안장대상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각 1부
(1 Copy of the Criminal Record Certificate or Other Equivalent Documents Thereto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안장 등의 신청) ① ~ ④ (생 략)	제3조(안장 등의 신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 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 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 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)에 <u>사망진단서 및 화장 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.</u>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망진단서, 화장증명 서, 안장하려는 자의 본국 정부 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각 ---.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